B.E. 2537(1994)년 보건부고시(제158호)
영유아용 보조식품

유아용 보조식품에 대한 보건부고시를 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B.E. 2522(1979)년 식품법 제5조 및 제6조 (1), (2), (4), (5), (6), (7), (10)의 내용에 근거하여 보건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항. 영유아용 보조식품은 구체적 통제식품이다.

2항. 영유아용 보조식품은 6개월에서 12개월의 영아 혹은 1세에서 3세 사이의 유아에게 일반식품 섭취에서의 영양가를 보충하고 식욕을 증진하는데 사용하는 식품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6종류가 있다.

(2.1) 가루 곡류로 주로 하여 만들어진 식품
(2.2) 채소 채소를 주로 하여 만들어진 식품
(2.3) 콩 콩을 주로 하여 만들어진 식품
(2.4) 과일 과일을 주로 하여 만들어진 식품
(2.5) 육류 모든 종류의 육류, 간, 알을 주로 하여 만든 식품
(2.6) 혼합 (2.1)에서 (2.5)까지의 식품 중 두 가지 이상을 혼합하여 만든 식품

3항. 영유아용 보조식품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3.1) 영유아용 보조식품의 특유의 맛과 향을 지닌다.
(3.2) 다음과 같은 특징 중 하나 보유.
(3.2.1) 건조형 영유아용 보조식품의 경우 덩어리지지 않는 분말형 또는 건조형이어야 하며 라벨의 지시에 따라 혼합한 경우에 숟가락으로 먹이기에 적절하고 부드러워야 한다.
(3.2.2) 액상 영유아용 보조식품의 경우 숟가락으로 먹이기에 적합한 단일형 내용물이거나 작은 덩어리 형태가 섞인 것이어야 한다.
(3.2.3) 식품의약품청이 승인한 기타 특성
(3.3) 식품의약품청이 승인한 종류와 함량의 영양소를 지닌다.
(3.4) 수분 함량은 다음과 같다.
(3.4.1) 섭취 전 끓일 필요가 없는 건조 형태의 영유아용 보조식품 5% 이하
(3.4.2) 섭취 전 끓일 필요가 있는 건조 형태의 영유아용 보조식품 8% 이하
(3.5) 호르몬이나 항생물질이 없다.
(3.6) 설탕을 대신하는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3.7) 방부제가 없다.
(3.8) 착색료 및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3.9) 식품의약품청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향미물질 사용하지 않는다.

(3.10) 병원성 미생물이 없다.

(3.11) 건강에 유해할 수 있는 양의 미생물 독성 물질 또는 기타 독성 물질이 없다.

(3.12) 대장균균은 식품 0.1g(0.01mL)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3.13) 멸균 처리한 영유아용 보조식품 0.1ml에서 세균이 검출되지 않는다.

(3.14) UHT 처리한 액상 형태의 영유아용 보조식품 0.1ml에서 세균이 검출되지 않는다.

(3.15) 섭취 전 끓일 필요가 없는 건조 형태의 영유아용 보조식품 1g 당 세균 50,000 이하, 섭취 전 끓일 필요가 있는 건조 형태 영유아용 보조식품 1g 당 100,000 이하이다.

(3.16) 다른 제조공정이나 처리를 거친 액상 형태의 영유아용 보조식품의 세균 검출 량은 식품의약품청의 승인을 받은 대로 따른다.

(3.17) 섭취 가능한 상태의 영유아용 보조식품의 무게에서 계산했을 때 해당 식품 100g의 나트륨은 200mg을 넘지 않는다.

4항. 액상 형태의 영유아용 보조식품은 다음과 같은 살균 공정을 거쳐야 한다.

(4.1) 멸균

(4.2) UHT(초고온 순간 살균)

(4.3) 기타 식품의약품청이 승인한 방법

5항. 영유아용 보조식품은 방사선 조사 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하며 방사선 조사를 거친 성분을 함유하지 않아야한다.

6항. 영유아용 보조식품은 생산에서는 필요한 경우 방부제 이외의 첨가제를 식품 첨가물에 관한 보건부고시를 준수해 사용해야 한다.

7항. 영유아용 보조식품에 이용되는 용기는 해당 식품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밀폐용기여야 하며 용기에 관한 보건부고시를 준수해야 한다.

8항. 영유아용 보조식품의 라벨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8.1) B.E. 2528(1985)년 9월 30일의 라벨에 관한 보건부고시(제95호)(No.2)에 의거해 개정된 B.E. 2525(1982)년 4월 29일의 라벨에 관한 보건부고시(제68호)를, 3항을 제외하고 준수해야 한다.

(8.2) 라벨은 태국어로 표기되어야 하지만 외국어도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담아야 한다.

(8.2.1) 식품명

(8.2.2) 식품 레시피 등록 번호 또는 라벨 사용 승인 표식

(8.2.3) 국내 생산의 경우 생산자나 포장자의 성명과 주소. 수입품인 경우 수입업자의 성명과 주소 및 원산지 국가.

(8.2.4) 식품의 양 (미터법)

(A) 분말 또는 고형인 경우 총중량

(B) 액상인 경우 총부피

(C) 고형과 액상의 중간인 경우 총중량 또는 총부피

(8.2.5) 식품의 주요 성분을 내림차순으로 비율(%)과 함께 표기하고 에너지값도 함께 표기해야 한다. 또한 식품 100g(또는 100mL)당 영양소의 양, 1회 권장 섭취량을 표기해야 한다.

(A) 에너지(Kcal 또는 KJ),

(B) 단백질 (g)

(C) 탄수화물 (g)

(D) 지방 (g)

(E) 비타민 (해당하는 경우)

(F) 미네랄 (해당하는 경우)

(8.2.6) “생산” 또는 “생산됨” 문구와 함께 일/월/연도. 재포장의 경우에는 “포장됨” 문구와 함께 일/월/연도.

(8.2.7) “기한” 문구와 함께 유통 기한의 일/월/연도

(8.2.8) 특히 사용 후의 보관 요령

(8.2.9) 조리 방법 (해당하는 경우)

(8.2.10) 해당하는 경우 “천연 향신료”, “인조 천연 향신료”, “합성 향신료”가 사용되었다는 문구.

(8.2.11) 굵은 적색 글씨로 “6개월 미만 유아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문구. 글자는 사각형 프레임에 크기와 높이는 5mm 이상.

(8.2.12) 식품의약품청이 정한 내용

본 고시는 유아용 보조식품에 관한 B.E. 2528(1985)년 1월 10일자 보건부고시(제86호)에 의거해 발행된 식품 레시피 등록 인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특정 유아용 보조식품에만 영향을 미친다. 언급된 보건부고시에 따라 식품레시피 등록증을 받은 자는 본 고시가 발효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본 고시에 부합하는 정확한 세부항목을 갖추도록 식품레시피를 수정하도록 한다. 그러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승인 시까지 또는 관계 기관이 사용 중지 고시를 하는 시점까지 기존 라벨을 사용할 수 있다.

첫 번째 문단에 따라 새로운 라벨 사용을 허가하는 것에 있어 만약 본 고시가 발효되기 전에 기존의 라벨이 남아 있고 본 고시에 맞지 않는 경우, 허가권자는 기존의 라벨이 소진될 때까지 사용하도록 허가해 줄 수 있지만 본 고시일이 발효된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는 않아야 한다.

본 고시는 관보에 게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유효하다.[1)]

B.E. 2537(1994)년 10월 14일 고시

아팃 우라이랏

---

1) 관보 제111권 / 특별호 54편 / 37쪽 / 1994년 11월 16일

공중보건부 장관

쑤깐야/인쇄
2009년 5월 28일